



2026.07 | 제7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규제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4

- ① 서론 • 4
- ②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환경 변화 • 8
- ③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9
- ④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14
- ⑤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16
- ⑥ 시사점 및 결언 • 35
- ⑦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2026) • 37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 39

-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39
-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44
- ③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49
-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 53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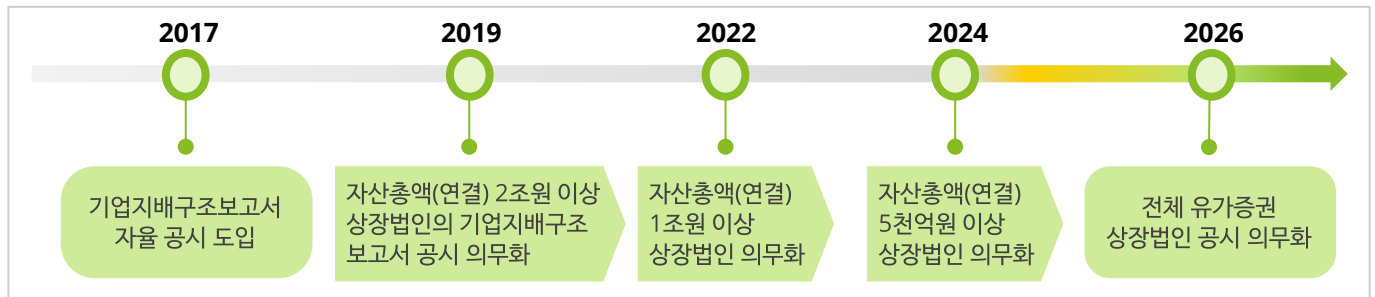
요약

- 20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에 따라, 본고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2025 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789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 2026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7%로, 전기(54.6%) 대비 6.9%p 하락하였으나, 이는 올해 자산 5천억원 미만 신규 편입기업(287개사)의 평균 준수율(29.8%)이 반영된 결과임
 - 기존 공시 대상 구간인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502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 대비 3.4%p 개선됨에 따라 기존 공시 대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나타남
 -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은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각각 +11.7%p, +12.8%p, +9.5%p)' 및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4~8%p대)' 항목에서 전기 대비 개선폭이 두드러졌으나, 집중투표제 채택(4.4%)·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인지 여부(11.3%)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보임
 - 최근 개정 상법에 따라 관련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요건 충족',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 상법에 대한 대응을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기업은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수준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개정 상법·가이드라인 개정·중점점검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임
-
- 20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2019년 자산총액(연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천억원 이상으로 그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옴
 - 2026년부터는 의무공시 대상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2019년의 최초 제출 의무화 시행 이후 7년 만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모든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포함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서론

<그림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일정



□ 본고는 2025 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부문 제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개괄적인 지배구조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함¹⁾

- 핵심지표는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영역에 대해 1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자,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및 책임투자의 판단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그 이행 여부는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음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센터 고유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⑨ 집중투표제 채택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감사기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 본고는 2026년 6월 2일까지 공시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며,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을 수록함. 공시 자료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서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표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구분	내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²⁾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신고)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 기재 - 기재 오류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거래소는 정정신고 요구 •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마련³⁾ - 보고서 미제출·허위기재·중요사항 누락·정정 요구 불응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 등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 -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재 및 신고 관련⁴⁾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 - 거래소는 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중요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거래소가 정정공시 요구 가능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제1호~제4호, 제35조

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서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CoE) 방식으로 작성됨
 - 10대 핵심원칙은 주주(2개), 이사회(6개), 감사기구(2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모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이와 별도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준수 여부를 O·X로 표시하는 정량적 성격의 표로 구성되며, 보고서 이용자가 기업 간 지배구조 수준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비교지표로 기능함

1.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환경 변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거래소는 2019년 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최초 제정한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2025년 12월 7차 개정을 실시함('25년 12월 15일 시행)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7차 개정사항 (2025.12)⁵⁾

내용
• 핵심지표 4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주식 삭제 • 세부원칙 1-2 신설: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세부원칙 1-4 보완: 주주환원정책 실시계획 통지 대상 확대 • 세부원칙 10-2 보완: 외부감사인 회의 진행방식·참석자 정보 구체화
□ 핵심지표 4(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와 관련하여 6차 개정('25.02)에서 이미 '분기배당'을 예측가능성 판단 시 제외항목에서 삭제한 데 이어, 7차 개정('25.12)에서는 해당 지표에 부기되어 있던 관련 각주(주식)가 삭제됨
□ 세부원칙 1-2(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가 신설되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하였는지 여부를 새롭게 기재하도록 함 •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뒷받침하는 절차적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핵심지표 3(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의 실질적 이행력을 제고하는 보완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세부원칙 1-4(주주환원정책 실시계획 통지 대상 확대)를 보완하여 기존에는 배당정책 자체의 통지 여부만 다루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까지 연 1회 통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함
□ 세부원칙 10-2(외부감사인 회의 진행방식·참석자 정보 구체화)를 보완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가 실질적인 방식(대면·화상 등)으로 진행되었는지, 참석자 정보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함

향후 가이드라인 전망: 개정 상법 반영

- 최근 개정 상법에 따라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요건 충족',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 상법에 대한 대응을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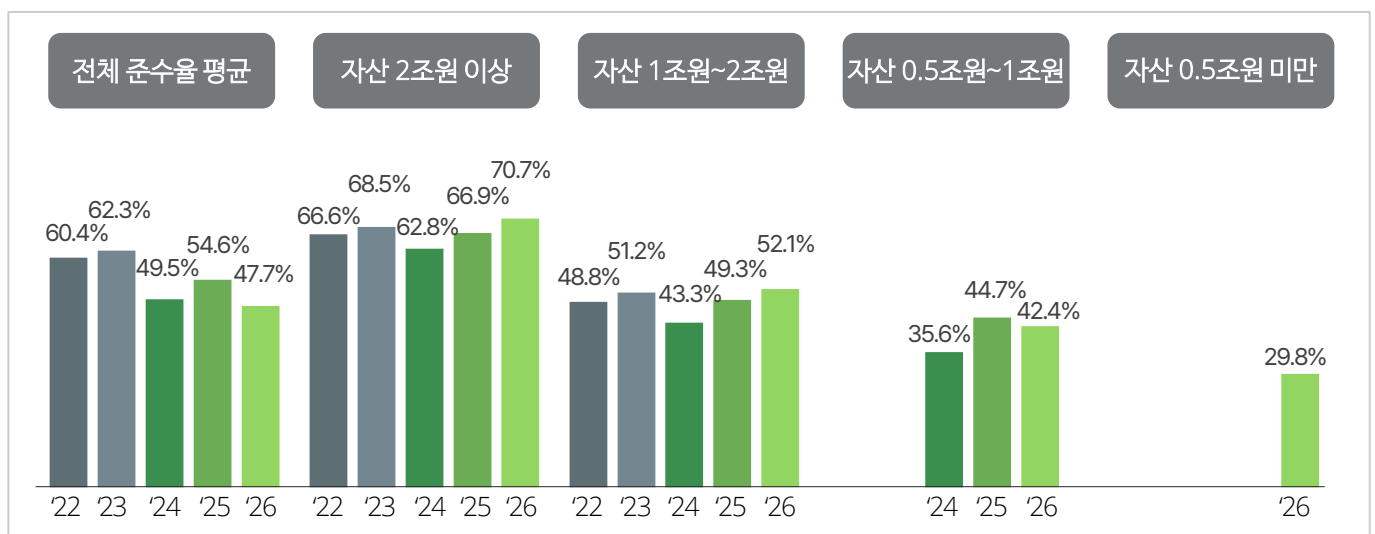
1.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6년 기준, 금융부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789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47.7%로, 전기(54.6%) 대비 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70.7%로 전기(66.9%) 대비 3.8%p 상승함
 - 자산 1조원~2조원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52.1%로 전기(49.3%) 대비 2.8%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1조원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42.4%로 전기(44.7%) 대비 2.3%p 하락함
 - 올해 처음 의무공시 대상에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29.8%로, 여타 자산규모 구간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전체 평균 준수율이 하락한 것은 2026년 전면 의무공시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287개사)의 미흡한 준수율(29.8%)이 전체 평균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 기존 공시 대상 구간인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502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 대비 3.4%p 개선됨에 따라 기존 공시 대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나타남

<그림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비율 평균 ⁶⁾



6)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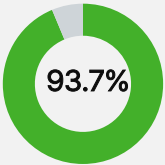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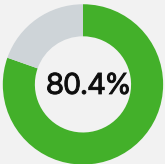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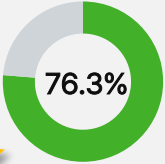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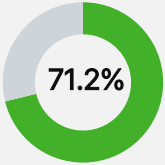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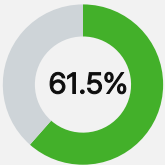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2026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이상

□ 2026년 기준, 하기의 5개 핵심지표는 평균 준수율이 50% 이상으로,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이상 7)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	
 93.7%	15개 핵심지표 중 가장 높은 준수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상법 제412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데 기인함 -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내부규정 및 절차로 명문화하여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80.4%	- 상법 제542의11에 따라 상장법인의 의무설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핵심지표 준수가 권고됨 -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는 개별/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100% 준수함
② 전자투표 실시	
 76.3%	- 전자투표의 도입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낮추고,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함 - 올해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64.8%)이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26년 중점점검사항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7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확대에 힘입어 15개 핵심지표 중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에서 전기 대비 개선폭이 두 번째로 큰 지표로(+4~8%p대 개선), 다수의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61.5%	- 내부통제정책에는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 포함이 요구됨 -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은 자산규모에 비례한 추이를 보임

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2026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미만

□ 2026년 기준, 하기의 10개 핵심지표는 평균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임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미만⁸⁾

⑨ 집중투표제 채택	4.4%	• 핵심지표 중 최저 수준의 준수율로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함 • 이사회와 소액주주 이익 반영에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최근 개정 상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제한하고 과태료 규정이 정비됨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1.3%	• 이사회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권고되나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함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29.0%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준수율이 미흡한 수준임 • 후보군 선정기준, 비상시 선임절차 등 승계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1.1%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외하면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법정 의무기간(2주)⁹⁾ 소집 실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34.6%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④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40.6%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비교적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업은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40.6%	• 내부감사부서원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 평가·이동 등의 사안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게 하여 경영진의 단독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준수율은 중간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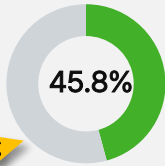
8)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9) 상법 제363조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미만(계속)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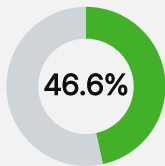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이나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및 개별/별도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일부는 여전히 단일성 이사회로 구성 중이며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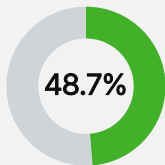
'26년 중점점검사항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내부감사기구는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
- 15개 핵심지표 중 전기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큼 (-17.3%p)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평균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음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평균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음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에서 각각 +3.3%p, +9.7%p, +4.1%p)

10)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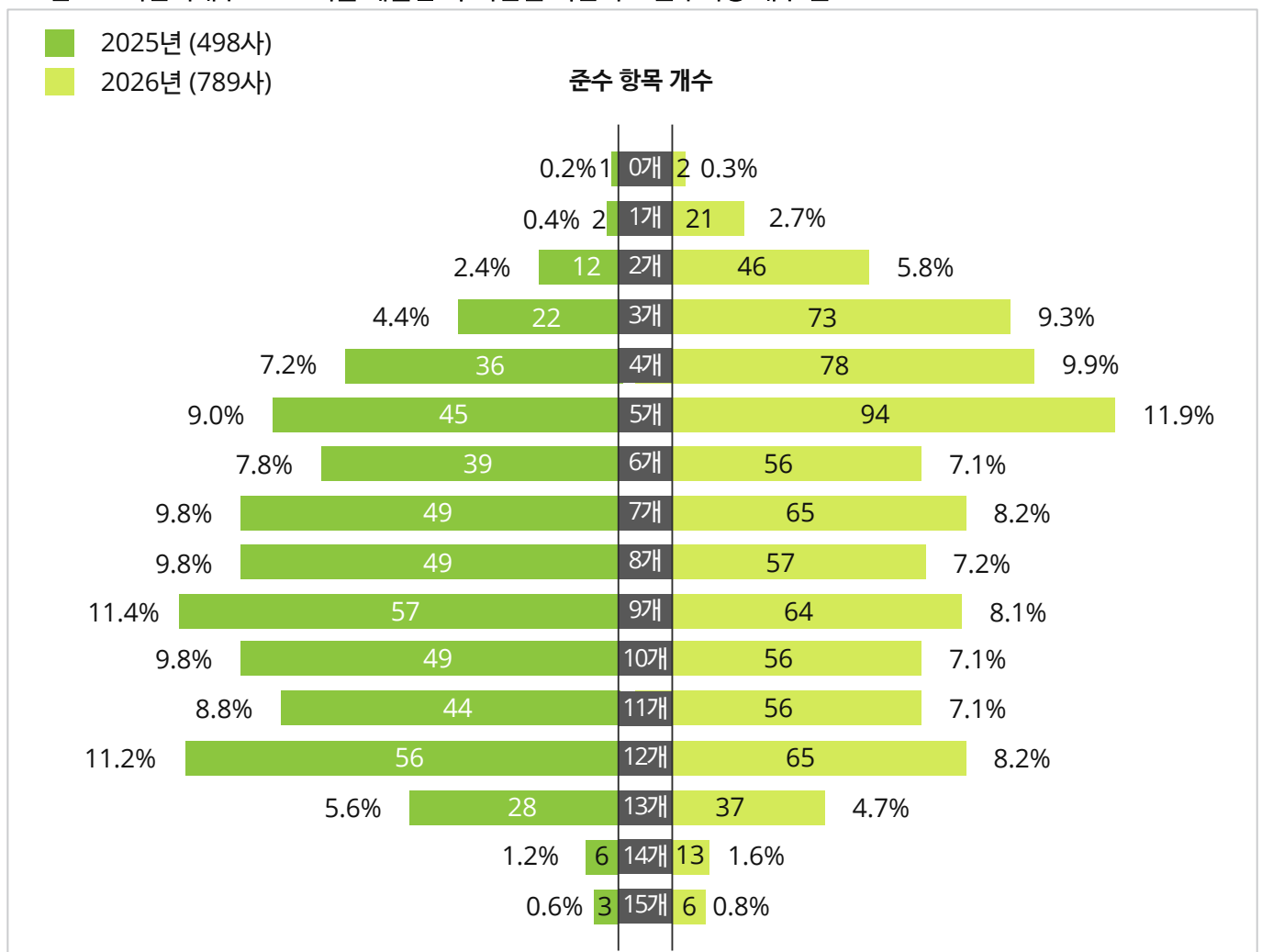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2026년 핵심지표 준수 개수별 분포

- 2025년 및 2026년 각각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상장법인에 대해 핵심지표 준수 개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포도를 제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핵심지표 준수 사항 개수에 대해, 0개, 5개 이하, 6~10개, 11~15개 4개 그룹으로 살펴보면, 5개 이하 준수 그룹이 전기 23.7%에서 39.8%로 16.1%p 급증한 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로 확인됨
 - 0개 준수 그룹은 전·당기 모두 1~2개사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함
 - 6~10개(48.8%→37.8%), 11~15개(27.5%→22.4%) 준수 그룹은 모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실제 준수 수준이 저하되었다기보다 전체 표본이 저준수 신규편입기업 위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 비중이 희석된 결과로 보임
 - 5개 이하 구간의 급증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신규 편입 상장법인(287개사, 평균 29.8%)이 절차적 부담이 낮은 소수의 핵심지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초기 대응 단계에 있음을 시사함

<그림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각 기업별 핵심지표 준수사항 개수 분포 ¹¹⁾



1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핵심 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4.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기재 충실도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중점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하며, 20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는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이 선정됨

- 그간의 점검결과 기재충실도가 미흡했던 사항 및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선정됨

<표 5>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¹²⁾

구분	중점점검사항
핵심지표 (4개 항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⑭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 * (5개 항목)	• 1-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1-②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및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
	• 1-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③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 10-②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 주주권리보호절차 적절성, 이사회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10대 원칙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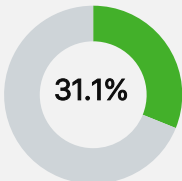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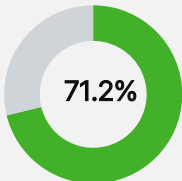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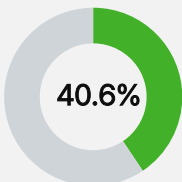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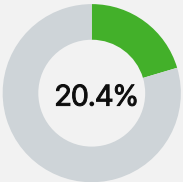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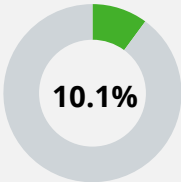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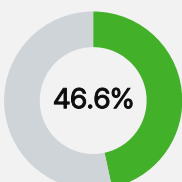
12) 한국거래소, 「'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12.29.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4.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준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¹³⁾

<표 6>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준수 현황 ^{14,15)}

I.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핵심지표①, 세부원칙 1-①)	
 31.1%	보고서 제출 직전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지 기재 여부
II.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핵심지표③, 세부원칙 1-②)	
 71.2%	- 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제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했는지 기재 여부 -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 개정했는지 기재 여부
III.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④, 세부원칙 1-④)	
 40.6%	- 배당기준일 관련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 실제 현금배당 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 (분기배당 실시 기업의 경우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확인)
IV.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세부원칙 2-③)	
 20.4% 정책 마련 여부  10.1% 계획 여부	-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분할 등 추진 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 기재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합병·분할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주주보호정책에 따라 시행한 사항을 점검
V.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핵심지표14, 세부원칙10-②)	
 46.6%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는지 기재 여부

13) 각 항목별 대표적인 준수율을 명기함

14) 한국거래소, 「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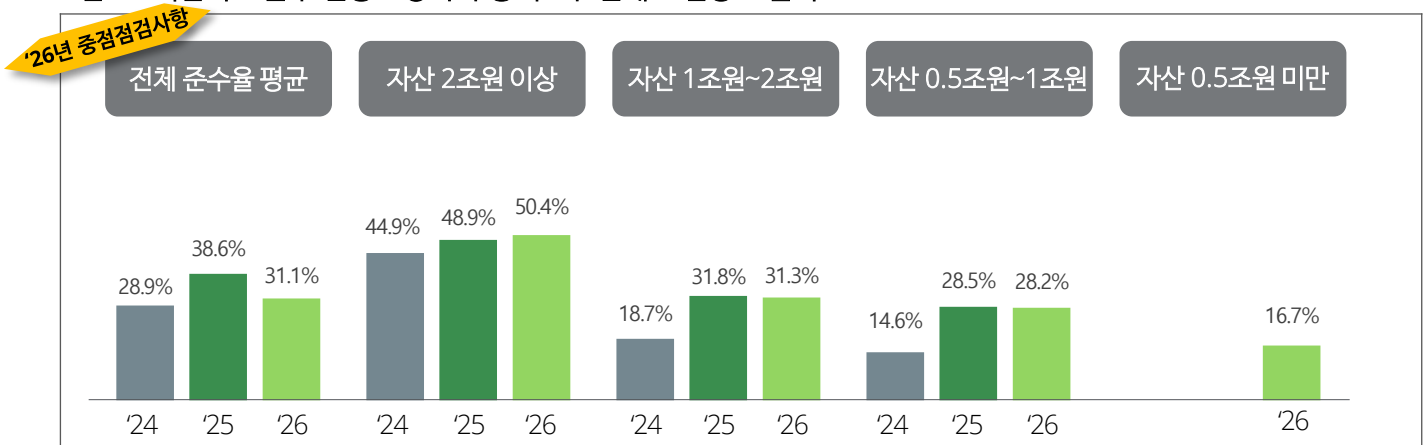
15) 한국거래소,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 2026.01.08.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그림 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¹⁶⁾



□ 해당 지표는 '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1.1%로 전기 대비 7.5%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0.4%로 전기 대비 1.5%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1.3%로 전기 대비 0.5%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8.2%로 전기 대비 0.3%p 하락함
- 올해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6.7%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외하면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상법 제363조상 의무기간(2주) 중심으로 운영 중임

- 한국의 법정 소집통지 기한(2주)은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권고 기준(4주)의 절반이며, OECD 조사에 의하면 15일 미만 통지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칠레,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임¹⁷⁾

<표 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①)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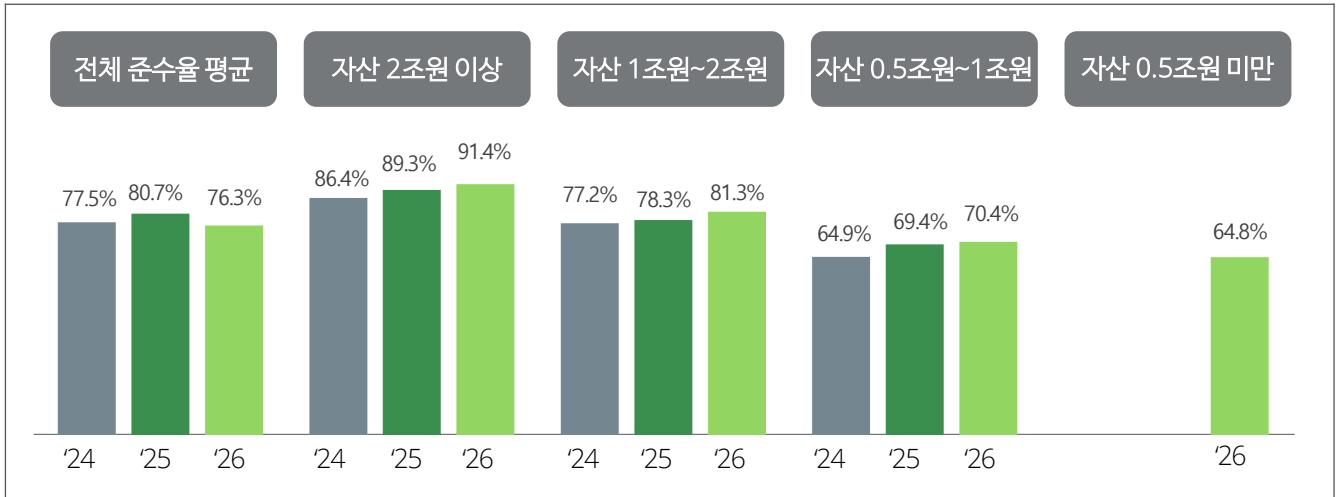
16)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그림 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¹⁸⁾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6.3%로 전기 대비 4.4%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1.4%로 전기 대비 2.1%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1.3%로 전기 대비 3.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0.4%로 전기 대비 1.0%p 상승함
 - 올해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4.8%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자투표의 도입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낮추고,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함
- 사전 전자투표 실시 기업은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 배제, 출석 주주 과반수만으로 의결 가능)할 수 있음
 - 특히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상 '합산 3%룰'¹⁹⁾로 인해 대주주 의결권만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요건 완화의 실익이 더욱 커진 상황임
- 이러한 제도 변화가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전자투표 도입 유인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준수율의 추가 상승이 기대됨

18)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19)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표 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②)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전자투표 실시여부 포함)
 - 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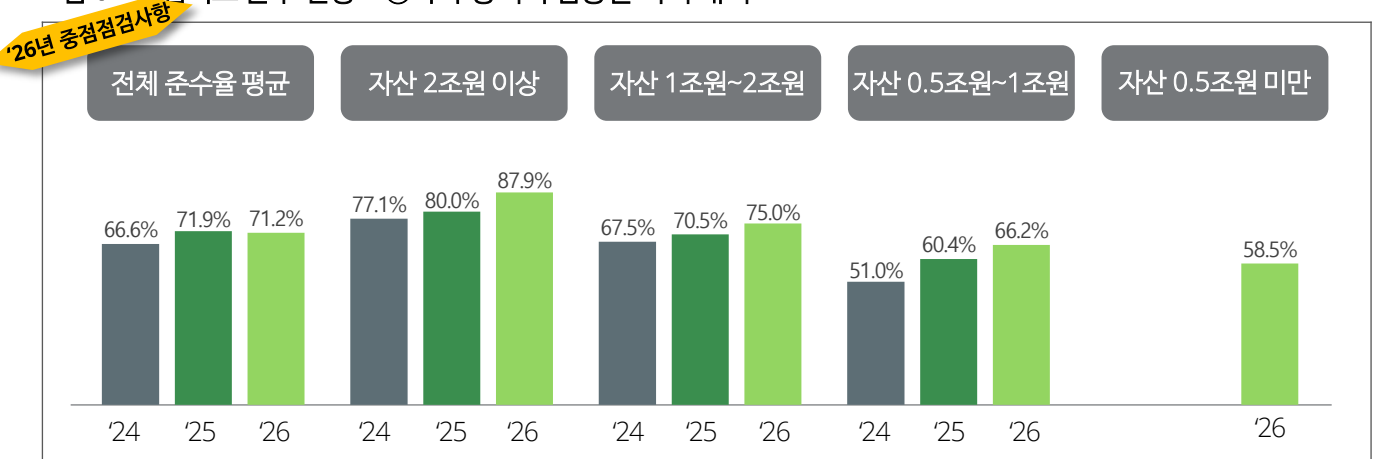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그림 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²⁰⁾



- 해당 지표는 '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1.2%로 전기 대비 0.7%p 소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7.9%로 전기 대비 7.9%p 대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5.0%로 전기 대비 4.5%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6.2%로 전기 대비 5.8%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8.5%임
-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에서 뚜렷한 개선세(+4~8%p대)가 나타났으며 20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 신규 지정된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기업들이 주주총회 분산 개최 원칙을 실제 실행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 확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표 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②)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전자투표 실시여부 포함),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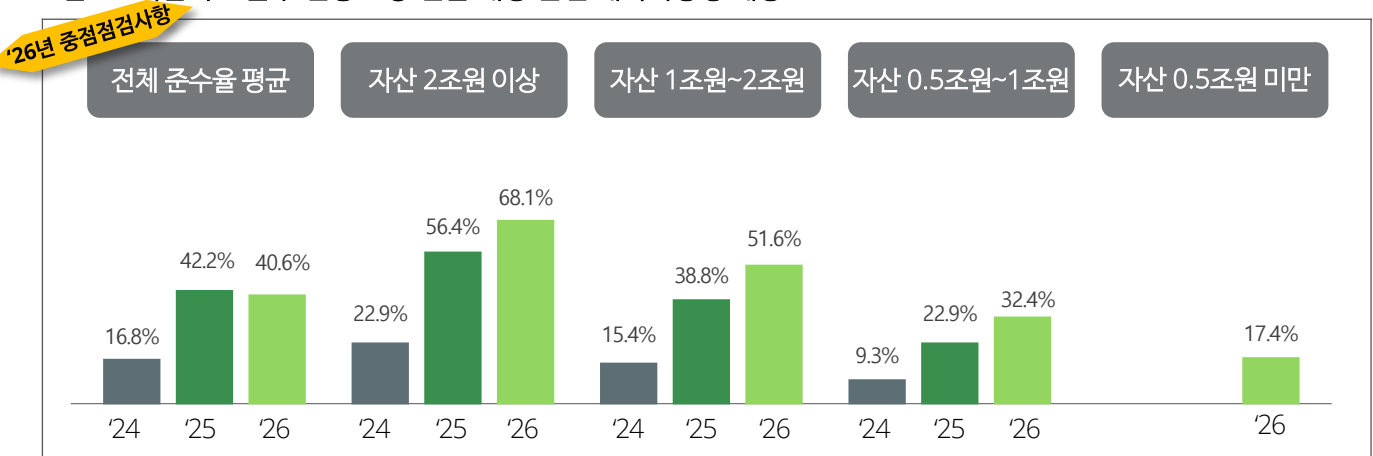
20)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그림 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²¹⁾



- 해당 지표는 '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0.6%로 전기 대비 1.6%p 소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8.1%로 전기 대비 11.7%p 대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6%로 전기 대비 12.8%p 대폭 상승하여 15개 지표 중 가장 큰 개선폭을 기록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2.4%로 전기 대비 9.5%p 대폭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7.4%임
-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에서 개선폭(각각 +11.7%p, +12.8%p, +9.5%p)이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나며, 배당 관련 제도 정비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확산의 결실로 해석됨

<표 1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④)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여부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했는지 여부(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실시 여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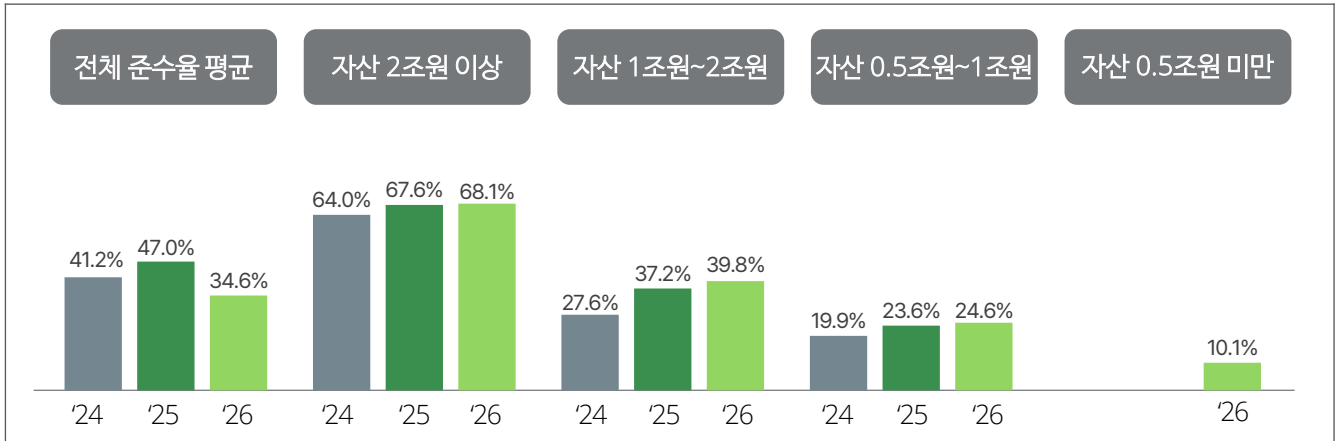
2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그림 8>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²²⁾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4.6%로 전기 대비 12.4%p 대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8.1%로 전기 대비 0.5%p 소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9.8%로 전기 대비 2.6%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4.6%로 전기 대비 1.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0.1%로, 2조원 이상 대비 차이(58.0%p)가 핵심지표 중 가장 큼

□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형 기업의 경우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핵심지표 ④(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의 전체 평균 준수율(40.6%)에 비해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파악됨

□ 가이드라인 7차 개정('25.12)으로 세부원칙 1-4의 통지 대상에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이 추가된 만큼, 향후 기재 요건 강화에 따른 변화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표 1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⑤)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 - 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1) 배당 관련 사항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나.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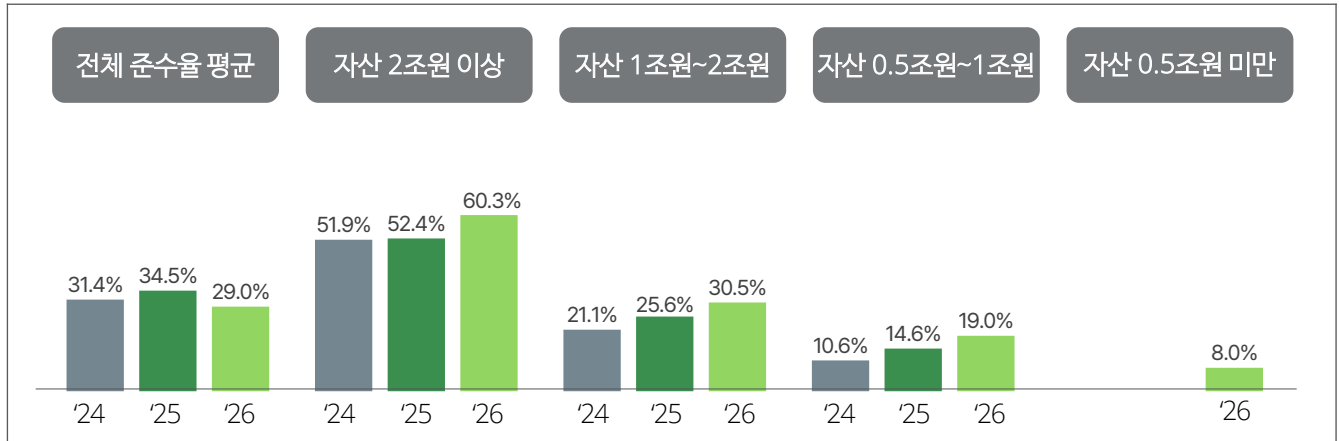
22)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그림 9>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²³⁾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29.0%로 전기 대비 5.5%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3%로 전기 대비 7.9%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0.5%로 전기 대비 4.9%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9.0%로 전기 대비 4.4%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0%임
- 핵심지표 중 평균 준수율이 하위권에 속하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양성 프로그램 또는 비상시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명문화된 정책으로 문서화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준수를 위해서는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구성·선정 기준과 절차, 후보자 평가·관리·교육, 외부후보자 고려사항, 비상시 승계 대응체계, 최고경영자 선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함

<표 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②)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연임 정책 포함)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 (2)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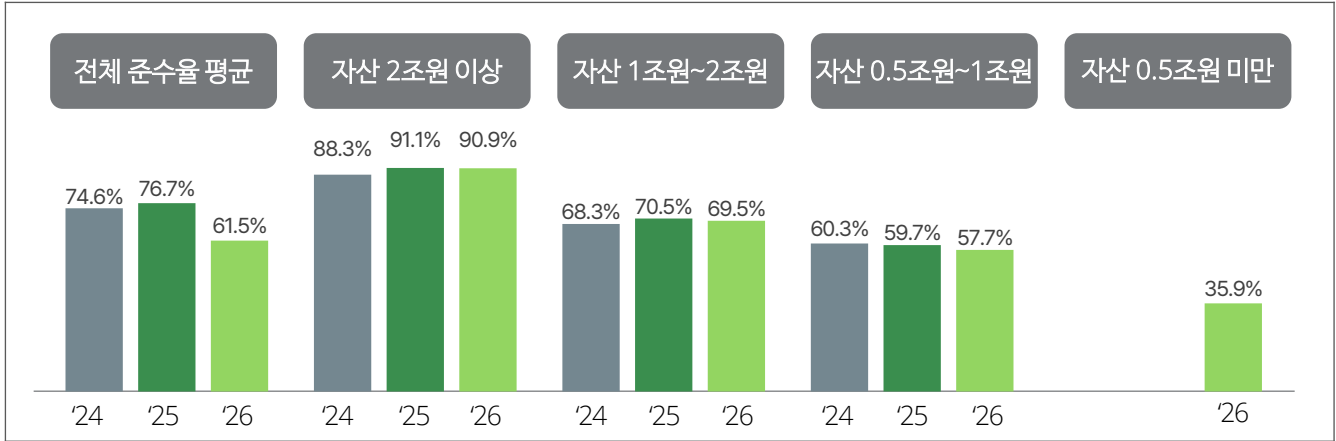
2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그림 10>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²⁴⁾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61.5%로 전기 대비 15.2%p 대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0.9%로 전기 대비 0.2%p 소폭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9.5%로 전기 대비 1.0%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7.7%로 전기 대비 2.0%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5.9%임
- 15개 핵심지표 중 유일하게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에서 소폭 하락이 관찰되나 이미 높은 준수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정체 또는 일부 기업의 세부 요건 미충족으로 해석됨
 -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다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정책을 이미 명문화·운영 중으로 전체적인 준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음
-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의 명문화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준법경영·공시정보관리 정책의 정비 여부가 미준수 사유로 주로 제시됨

24)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표 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③)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에 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1)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 (2)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3)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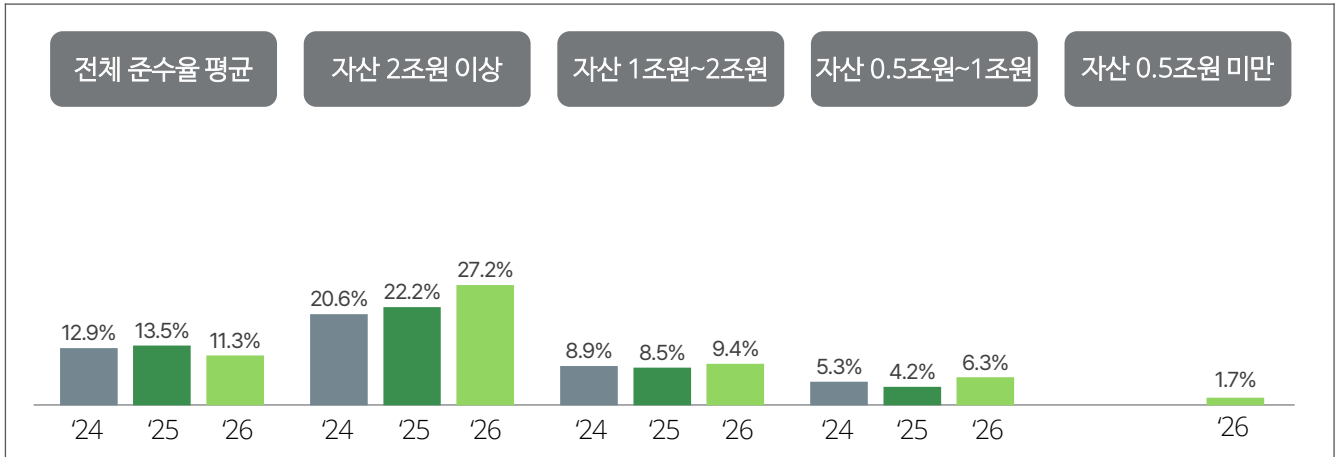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그림 11>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²⁵⁾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11.3%로 전기 대비 2.2%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7.2%로 전기 대비 5.0%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4%로 전기 대비 0.9%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3%로 전기 대비 2.1%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7%임

□ 본 지표는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에 무게를 두는지, 혹은 경영진과의 전략적 협업·운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배구조 관행으로 권고되고 있음 ²⁶⁾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미분리 시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이 권고되며, 선임사외이사는 의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사외이사 간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을 지원함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일부는 보완책으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대표이사의 회사·산업 이해도를 근거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미준수의 주된 사유로 제시됨

□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문화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및 논의 활성화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25)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6) 지배구조 모범규준 II.5.1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표 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①)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6) 선임(先任)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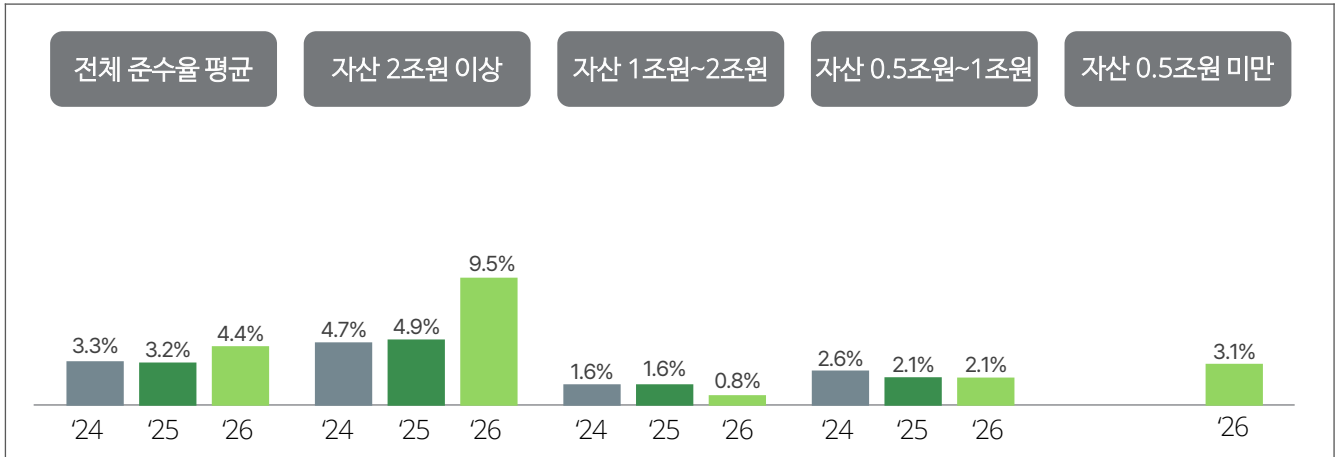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

<그림 12>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 ²⁷⁾



- 집중투표제 ²⁸⁾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중 전체 준수율 평균(4.4%)이 가장 낮은 항목이나, 전기 대비 1.2%p 상승하여 15개 지표 중 유일하게 전체 준수율 평균이 상승한 지표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5%로 전기 대비 4.6%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0.8%로 전기 대비 0.8%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1%로 전기와 동일한 수준임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1%p임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과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두 구간 모두 준수 기업 수 자체가 1~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어, 실질적인 규모별 경향 차이로 해석하기보다는 본 지표의 낮은 준수율에서 비롯된 통계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이며, 이사회 구성에 소액주주의 이해 반영 여부를 가능할 수 있음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다수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8) 상법 제382의2.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존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개정 상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며,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년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구간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부 기업은 정관상 이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임기 분산 등을 통해 집중투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방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형식적 도입과 실질적 소수주주 대표성 제고 간의 간극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표 1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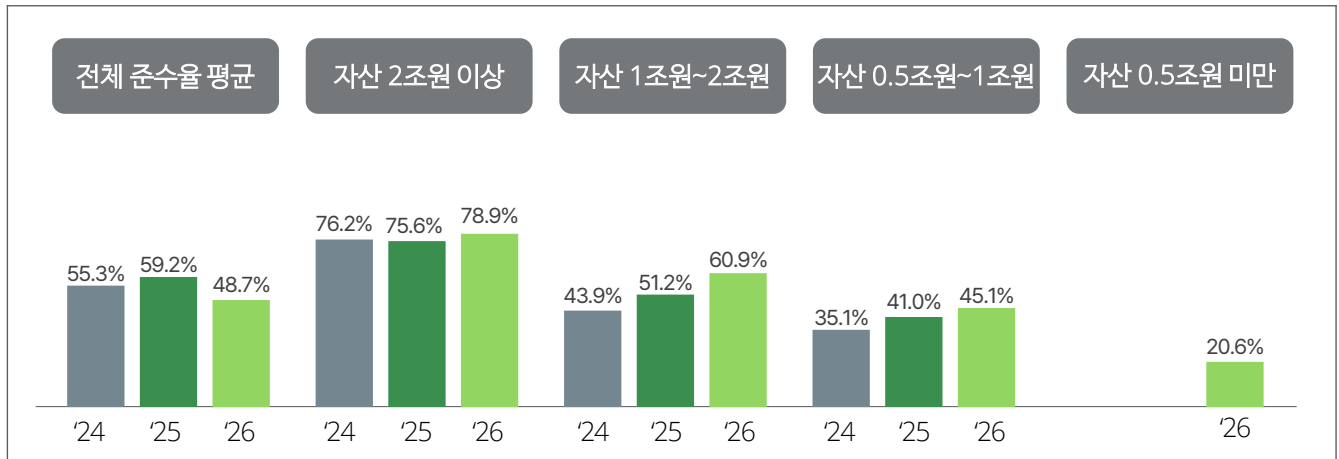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 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그림 13> 핵심지표 준수 현황-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²⁹⁾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8.7%로 전기 대비 10.5%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8.9%로 전기 대비 3.3%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9%로 전기 대비 9.7%p 대폭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5.1%로 전기 대비 4.1%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0.6%임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단순히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현황 점검만으로는 부족함
-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판단주체·절차가 명문화된 정책으로 존재해야 준수로 인정됨

<표 1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④)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④)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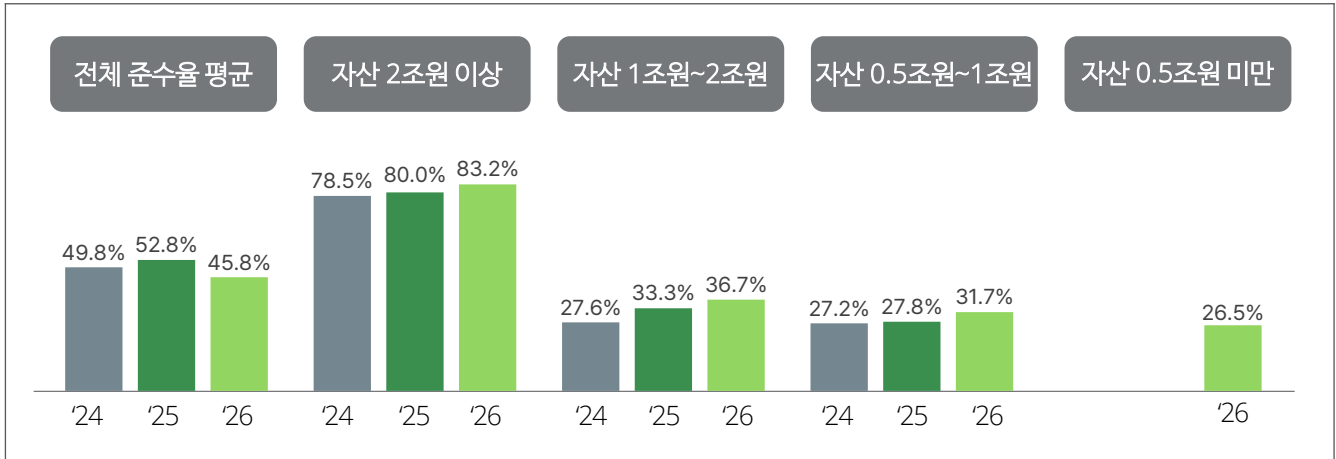
29)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그림 14>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³⁰⁾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5.8%로 전기 대비 7.0%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3.2%로 전기 대비 3.2%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6.7%로 전기 대비 3.4%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1.7%로 전기 대비 3.9%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6.5%임

□ 자본시장법상 여성임원 다양성 요건이 자산 2조원 이상(개별/별도 기준) 기업에만 의무적용되어 규모별 차이가 큰 추세 속함

-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의 준수는 상당 부분 자발적 변화로 평가되어 고무적이나,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로 여성 이사를 선임하려는 계획을 밝힌 기업이 다수로, 이는 내부에서 여성 임원 후보군을 발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장기적인 후보군 육성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표 1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②)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4 - 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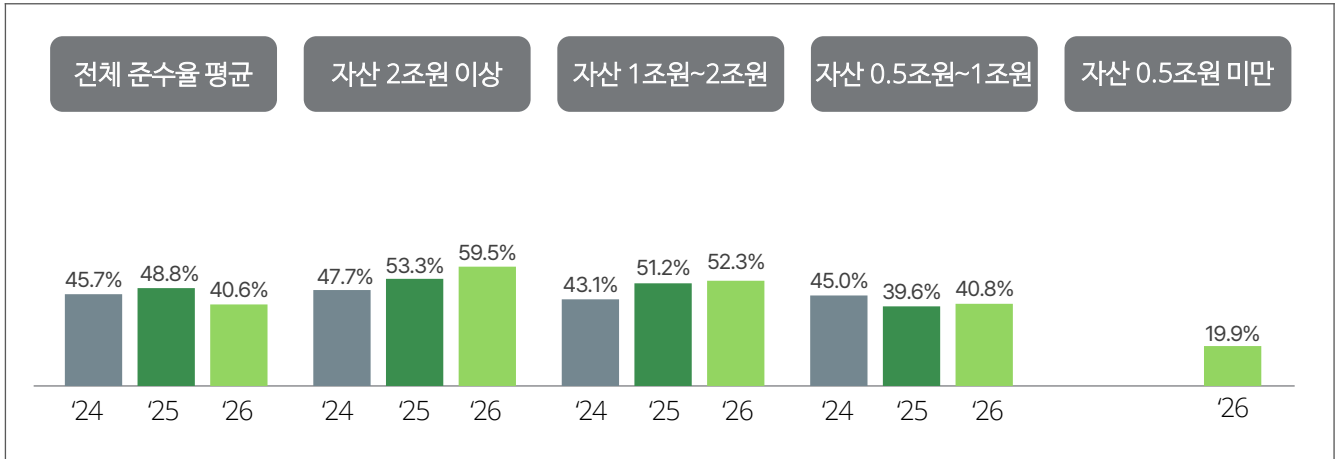
30)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그림 1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³¹⁾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0.6%로 전기 대비 8.2%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9.5%로 전기 대비 6.2%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2.3%로 전기 대비 1.1%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0.8%로 전기 대비 1.2%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9.9%임

□ 내부감사기구가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사안임 ³²⁾

□ 자산 2조원 이상 구간의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자 및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가 보유하거나 최소한 임면·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해야 함

- 단순한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미준수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표 1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법·내부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현황
- (2)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내부감사기구에 인사조치권이 있거나 최소한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

3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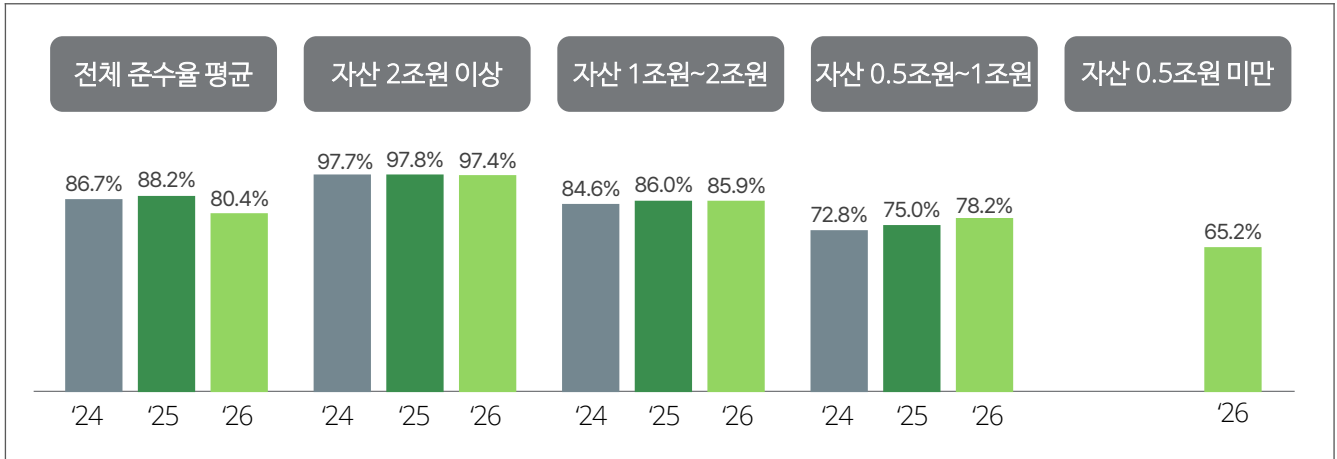
3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1 &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권장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그림 1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³³⁾



-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80.4%로 전기 대비 7.8%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7.4%로 전기 대비 0.4%p 소폭 하락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5.9%로 전기 대비 0.1%p 소폭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8.2%로 전기 대비 3.2%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5.2%p임
-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법인은 상법 제542조의11 및 그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회계·재무전문가를 1명 이상 감사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반면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³⁴⁾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한 개별·별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3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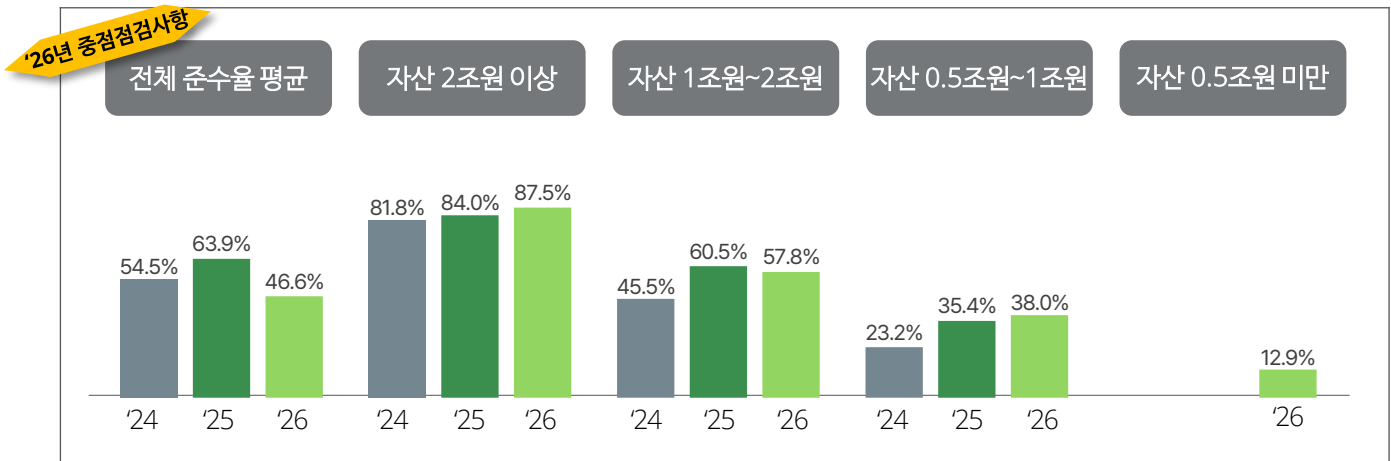
34) 감사 설치 기업의 다수가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그림 1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³⁵⁾



□ 해당 지표는 '26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6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6.6%로 전기 대비 17.3%p 대폭 하락하여 15개 핵심지표 중 하락폭이 가장 큼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7.5%로 전기 대비 3.5%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7.8%로 전기 대비 2.7%p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8.0%로 전기 대비 2.6%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2.9%로, 2조원 이상 대비 차이(74.6%p)가 가장 큰 지표임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감사인과 직접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려는 노력이 권장됨 ³⁶⁾

□ 회의의 비정기적 개최, 서면 보고로의 대체, 경영진 참석 등이 주요 미준수 사유로 제시됨

<표 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세부원칙 10 - ②)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10 - 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공시대상기간내 실시한소통내역을 기재하며, 구체적인 회의 진행방식(대면/화상 등) 및 참석자 정보 포함 기재)
 -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35)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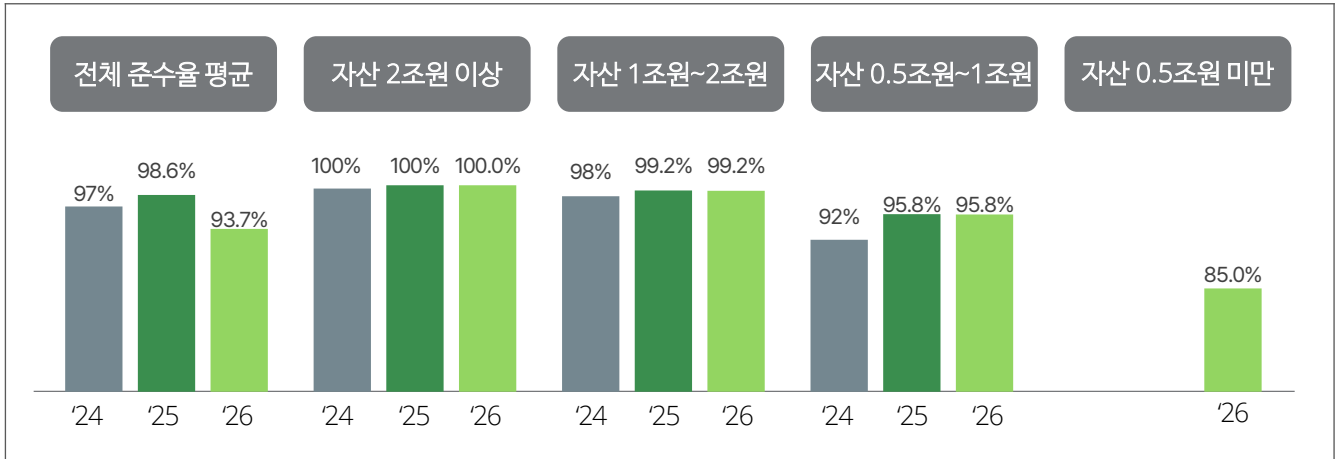
36)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그림 18>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³⁷⁾



□ 해당 지표는 15개 핵심지표 중 전체 준수율 평균(93.7%)이 가장 높은 항목이며, 전기 대비 4.9%p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00.0%로 전기와 동일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9.2%로 전기와 동일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5.8%로 전기와 동일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5.0%로, 15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준수 수준을 보임

□ 상법 제412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내부규정·절차로 명문화하여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 -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37)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6. 시사점 및 결론

- 본고는 2026년 유가증권시장 전체 비금융 상장법인(789개사)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파악함
 - 기업들이 자사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타사와 비교 및 참조하여 자율적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6년 기준,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47.7%로, 전기(54.6%) 대비 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287개사)의 미흡한 준수율(29.8%)이 반영된 영향이며, 기존 공시 대상 구간인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502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 대비 3.4%p 개선됨에 따라 기존 공시 대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나타남
 -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및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그룹은 대부분의 핵심지표에서 견조한 개선세가 확인되며, 특히 '④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각각 +11.7%p, +12.8%p, +9.5%p)'과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4~8%p대)'의 개선폭이 두드러짐
 - 반면, '⑨ 집중투표제 채택(4.4%)',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11.3%)' 등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보이며 기업들의 도입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단순한 공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 방향과 개선 필요사항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충실한 작성 노력과 지배기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점검이 요구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우수한 수준임에도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 주식시장에서의 상대적 소외, 경영권 분쟁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사례도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는 매년 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해당 점검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 운영 현황과 관련 공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6년 하반기는 개정 상법의 핵심 조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전환점으로, 상장회사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임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6. 시사점 및 결론

- 2026년 7월 23일부터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의무 선임 비율이 25%에서 33.3%로 확대되며(2027.7.22.까지 유예),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으로 확대 적용됨
 -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최하위 준수율이 나타난 '㉠집중투표제 채택(평균 준수율 4.4%)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제도 변화로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³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대응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은 자사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수준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개정 상법·가이드라인 개정·중점점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임



38) 국내 행동주의 펀드 대상 기업 수는 2017년 3개사에서 2023년 77개사로 급증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7.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2026)

<표 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³⁹⁾

구분	핵심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자산 0.5 조~1조
주주	26년 중점점검사항 ①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28.9% 141사	44.9% 96사	18.7% 23사	14.6% 22사
	② 전자투표 실시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79.2% 251사	82.4% 168사	73.5% 83사	77.5% 378사	86.4% 185사	77.2% 95사	64.9% 98사
	26년 중점점검사항 24년설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73.8% 234사	79.4% 162사	63.7% 72사	66.6% 325사	77.1% 165사	67.5% 83사	51% 77사
	26년 중점점검사항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16.8% 82사	22.9% 49사	15.4% 19사	9.3% 14사
	⑤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배당정책·실시 계획 통지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41.2% 201사	64% 137사	27.6% 34사	19.9% 30사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운영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31.4% 153사	51.9% 111사	21.1% 26사	10.6% 16사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운영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77.6% 246사	86.8% 177사	61.1% 69사	74.6% 364사	88.3% 189사	68.3% 84사	60.3% 91사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12.9% 63사	20.6% 44사	8.9% 11사	5.3% 8사
	⑨ 집중투표제 채택	3.7% 11사	5.2% 10사	1.0% 1사	4.1% 13사	5.9% 12사	0.9% 1사	3.3% 16사	4.7% 10사	1.6% 2사	2.6% 4사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65.6% 208사	75.0% 153사	48.7% 55사	55.3% 270사	76.2% 163사	43.9% 54사	35.1% 53사
감사기구	24삭제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24년설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49.8% 243사	78.5% 168사	27.6% 34사	27.2% 41사
	24삭제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45.7% 223사	47.7% 102사	43.1% 53사	45% 68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86.7% 423사	97.7% 209사	84.6% 104사	72.8% 110사
	26년 중점점검사항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64.7% 205사	77.9% 159사	40.7% 46사	54.5% 266사	81.8% 175사	45.5% 56사	23.2% 35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 여부	98.7% 294사	100% 194사	96.2% 100사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96.9% 473사	99.5% 213사	98.4% 121사	92.1% 139사
	준수비율 평균	60.4%	66.6%	48.8%	62.3%	68.5%	51.2%	49.5%	62.8%	43.3%	35.6%

39) 총조사대상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7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상장법인은 미포함)

I.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7.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2026)

<표 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계속) ⁴⁰⁾

구분	핵심지표	2025년				2026년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자산0.5조 ~1조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자산0.5조 ~1조	자산0.5조 미만
주주	26년 중점점검사항 ①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8.6% 192사	48.9% 110사	31.8% 41사	28.5% 41사	31.1% 245사	50.4% 117사	31.3% 40사	28.2% 40사	16.7% 48사
	② 전자투표 실시	80.7% 402사	89.3% 201사	78.3% 101사	69.4% 100사	76.3% 602사	91.4% 212사	81.3% 104사	70.4% 100사	64.8% 186사
	26년 중점점검사항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71.9% 358사	80.0% 180사	70.5% 91사	60.4% 87사	71.2% 562사	87.9% 204사	75.0% 96사	66.2% 94사	58.5% 168사
	24년 신설 26년 중점점검사항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42.2% 210사	56.4% 127사	38.8% 50사	22.9% 33사	40.6% 320사	68.1% 158사	51.6% 66사	32.4% 46사	17.4% 50사
	⑤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배당정책·실시 계획 통지	47.0% 234사	67.6% 152사	37.2% 48사	23.6% 34사	34.6% 273사	68.1% 158사	39.8% 51사	24.6% 35사	10.1% 29사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운영	34.5% 172사	52.4% 118사	25.6% 33사	14.6% 21사	29.0% 229사	60.3% 140사	30.5% 39사	19.0% 27사	8.0% 23사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운영	76.7% 382사	91.1% 205사	70.5% 91사	59.7% 86사	61.5% 485사	90.9% 211사	69.5% 89사	57.7% 82사	35.9% 103사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3.5% 67사	22.2% 50사	8.5% 11사	4.2% 6사	11.3% 89사	27.2% 63사	9.4% 12사	6.3% 9사	1.7% 5사
	⑨ 집중투표제 채택	3.2% 16사	4.9% 11사	1.6% 2사	2.1% 3사	4.4% 35사	9.5% 22사	0.8% 1사	2.1% 3사	3.1% 9사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59.2% 295사	75.6% 170사	51.2% 66사	41.0% 59사	48.7% 384사	78.9% 183사	60.9% 78사	45.1% 64사	20.6% 59사
감사기구	24삭제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24년 신설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52.8% 263사	80.0% 180사	33.3% 43사	27.8% 40사	45.8% 361사	83.2% 193사	36.7% 47사	31.7% 45사	26.5% 76사
	24삭제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48.8% 243사	53.3% 120사	51.2% 66사	39.6% 57사	40.6% 320사	59.5% 138사	52.3% 67사	40.8% 58사	19.9% 57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88.2% 439사	97.8% 220사	86.0% 111사	75.0% 108사	80.4% 634사	97.4% 226사	85.9% 110사	78.2% 111사	65.2% 187사
	26년 중점점검사항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3.9% 318사	84.0% 189사	60.5% 78사	35.4% 51사	46.6% 368사	87.5% 203사	57.8% 74사	38.0% 54사	12.9% 37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 여부	98.6% 491사	100.0% 225사	99.2% 128사	95.8% 138사	93.7% 739사	100.0% 232사	99.2% 127사	95.8% 136사	85.0% 244사
준수비율 평균		54.6%	66.9%	49.3%	44.7%	47.7%	70.7%	52.1%	42.4%	29.8%

40) 총조사대상회사: FY2025 기준 모든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787개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298개사(핵심지표작성제외대상인금융부동산상장법인은미포함)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요약

-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이 실제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된 첫 주총 시즌으로, 이사회 구성·감사위원회 운영·주주권 행사·보상체계 전반에서 제도 변화가 확인됨
- 전체 상장사의 84.5%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및 자기주식 제도 등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정관 정비가 집중적으로 진행됨
-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실제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주제안 확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보수 거버넌스 관련 논의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남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개요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473개사를 대상으로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6년 2월 개정)」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였음¹⁾

<표 1> 2026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구분	전체	재무 제표 · 이익 배당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 ²⁾
				이사회				감사기구		계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	감사 위원	감사					
반대 권고 수(건)	723	48	199	74	9	71	77	36	31	298	108	5	11	54
상정 안건 수(건)	4,172	489	1,225	570	59	358	366	143	73	1,569	480	177	75	157
26년 반대 권고율(%)	17.3	9.8	16.2	13.0	15.3	19.8	21.0	25.2	42.5	19.0	22.5	2.8	14.7	34.4
25년 반대 권고율(%)	14.9	10.6	14.1	7.8	6.3	19.7	18.4	22.0	55.9	16.7	16.8	0.8	-	25.0

1) 한국ESG기준원,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6.04.30.

2)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 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 건, 주식분할 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 의 건 등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대상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 총 4,17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 중 임원 선임 안건이 1,569건(37.6%)로 가장 많음
- KCGS는 상정된 총 안건 4,172건 중 723건(17.3%)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14.9%) 대비 2.4%p 증가한 수치임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상정 안건 분석

1) 정관 변경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독립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정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정관 변경 안건은 총 1,225건이 상정되었으며, KCGS는 주주권리 보호 미비 또는 적대적 M&A 방어 등의 우려가 있는 199건(16.2%)에 대하여 반대 권고 하였음(전년 대비 2.1%p 증가)
 -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전자주주총회 배제, 보수한도 명문화,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사(감사) 책임감경과 같은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의 안건 수가 증가함
 - 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CB, BW) 발행 한도의 확대에 따른 주주권 희석 우려로 인한 반대 권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안건 수 기준으로는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³⁾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배제조항 삭제 안건이 상정됨
 -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시점에 다수의 이사가 동시에 선임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이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남
-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적용이 가능해짐
 - 2026년 9월 10일 이후에는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정관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를 배제할 수 없음 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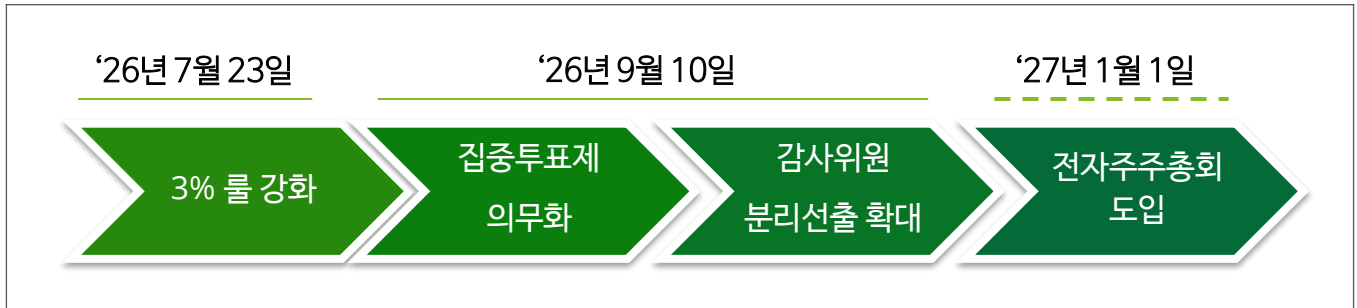
3) 2024년: 51.1%(24건) → 2025년: 38.7%(12건) → 2026년: 14.6%(35건)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상장사 2026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6.04.14.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그림 1>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상법



2) 이사 선임

-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KCGS의 반대 권고율은 전년 대비 2.3%p 상승하였으며, 특히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5.6%p↑)
-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한 반대 권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담합 등과 관련하여 감사·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가 확대됨

<표 2> 2026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⁵⁾

반대사유	2024년		2025년		2026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51	55.4	50	61	73	45.3
법령상 결격사유 및 충실성 우려	18	19.6	11	13.4	26	16.1
회사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8	8.7	10	12.2	23	14.3
장기 재임	1	1.1	5	6.1	13	8.1
전문성 결여	-	-	1	1.2	5	3.1
성별 구성의 다양성 위반	5	5.4	1	1.2	4	2.5
기타	9	9.8	4	4.9	17	10.6
합계	92	100	82	100	161	100

5) 한국ESG기준원,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6.04.30.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3) 이사 보수 한도

-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투자자의 검증이 강화되면서 보수한도 상정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남
 - KCGS 분석 결과 이사보수한도 안건 480건 중 108건(22.5%)에 대해 반대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반대 권고율은 전년(16.8%) 대비 5.7%p 상승함
 - 보수 총액 기준의 일괄 상정 방식 대신 이사별로 보수한도를 구분하여 상정한 기업은 16사(42건)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8사(50.0%)는 과도한 보수한도를 사유로 1건 이상의 반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슈가 보수 결정 절차와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등장함
 - 대법원은 2025년 4월 임원보수한도 승인안건 결의 시 임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시⁶⁾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함
- 주식기준보상 및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확대됨
 - 이사보수한도 안건과 함께 RSU⁷⁾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업은 10사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별도로 RSU·PSU⁸⁾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됨
 - KCGS는 장기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가득조건, 보상체계 및 보상규모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사유로 일부 주식기준보상 안건에 반대 권고를 제시하였음

4) 임원 보수 규정

-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 상정 확대 및 반대 권고가 증가함
 - 올해 19개사가 총 21건의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8건(85.7%)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하고, 이는 전년 2개사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임
 -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한 19개사 중 15개사(78.9%)가 임원보수규정에 보수한도액을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수한도가 고정되는 구조임
 - 보수한도를 규정에 명시한 기업의 대다수는 해당 규정 개정을 전제로 당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임원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CGS는 이를 주주의 임원보수한도 통제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 권고함

6)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7)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estricted Stock Unit, RSU)은 일정한 재직기간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임

8) 성과연동주식보상(Performance Stock Unit, PSU)은 회사의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임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의 새로운 승인 안건으로 등장함

-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⁹⁾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상장회사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KCGS 분석 대상 기업 중 74개사가 관련 안건을 상정, 전체 75건 중 11건(14.7%)에 대해 반대투표가 권고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반대 권고 사유로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 상정, 구체적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보유 계획 등이 제시됨

□ 자기주식 활용 목적과 관련 공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

- KCGS는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 구체적 목적이 없는 보유 계획,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 시 지급 조건 및 지급 대상에 대한 공시 미흡 등을 주요 반대 권고 사유로 제시함

주주제안 상정

□ 주주제안 상정 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범위 또한 이사회 구성 및 경영정책 관련 사안으로 확대됨

-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 수가 전년 7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하는 등 주주제안이 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비핵심자산 매각 및 활용, 자본배분정책 수립, 임원보상체계 구체화 등 그동안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인식되던 주제가 주주제안 안건에 포함되면서 주주제안의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주제안 가결 사례의 대부분은 이사 선임 안건으로, '3%룰' 활용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2026년 7월 '합산 3%룰'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구조 변화와 함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회 진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 개정 상법 시행으로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감사위원회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운영과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관 변경, 감사위원 선임, 임원보수규정 등 주주권익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로, 기업은 안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다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짐

□ 주주제안이 경영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음

9) 상법 제341조의4 제2호, 제3호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요약

- 금융감독원은 2025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전반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어, 정보이용자는 감사의견뿐 아니라 강조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K-IFRS 제1118호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규정 강화 및 회계부정 신고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함

감사의견 분석 개요

- 금융감독원은 '25 회계연도 결산일이 도래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감사의견(2,702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1,653사)을 분석함¹⁾
- 분석 결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97.5%, 2,615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비율은 98.6%(1,629사)로 전기(98.0%, 1,582사)보다 다소 개선됨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

1) 적정 의견

- '25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702사)의 97.6%(2,637사)로, '19년 new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함
 -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8.5%), 코스닥(97.6%), 코넥스(89.9%) 순으로 나타남
 - 소규모 기업일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1,009사, 전체 37.3%)의 적정의견 비율이 95.2%로 가장 낮음

1) 금융감독원,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2026.06.16.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표 1> '25년 재무제표 적정 감사의견 현황 ²⁾

(단위: 사, %)

구분	시장별			규모별 ('25년 말 자산기준)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5천억원	5천억원 ~2조원	2조원 이상	
전체	808	1,785	109	1,009	1,085	399	209	2,702
적정의견	796	1,743	98	961	1,071	396	209	2,637
(비 중)	(98.5)	(97.6)	(89.9)	(95.2)	(98.7)	(99.3)	(100)	(97.6)

□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6사(2.5%)로 전기(84사) 대비 18사 감소함

- 전기('24년)에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84사)의 32.1%(27사)가 당기('25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바, 정보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함(미기재기업 1.4% 대비 높은 수준)

2) 비적정 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사(2.4%)로 전기(66사, 2.5%) 대비 소폭(△1사, 0.1%p) 감소함

- '의견거절'은 61사로 전기(58사) 대비 3사 증가, '한정의견'은 4사로 전기(8사) 대비 4사 감소함
- 유가증권 12사(1.5%), 코스닥 42사(2.4%), 코넥스 11사(10.1%)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임

<표 2> '25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³⁾

(단위: 사, %)

구분	'25년 (A)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4년 (B)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증감(A-B)
전체	2,702	808	1,785	109	2,681	816	1,745	120	+21
의견거절	61	11	40	10	58	13	36	9	+3
한정	4	1	2	1	8	3	5	-	△4
비적정의견계	65	12	42	11	66	16	41	9	△1
(비 중)	(2.4)	(1.5)	(2.4)	(10.1)	(2.5)	(2.0)	(2.3)	(7.5)	-

□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부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이며, 그 외 대여금 등 자금거래, 기초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2), 3) 금융감독원,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2026.06.16.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1) 적정 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1,653사)⁴⁾의 98.6%(1,629사)로 전기(98.0%) 대비 다소 개선(+0.6%p)됨

- 코넥스는 100%, 유가증권 및 코스닥은 약 98% 수준임
-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천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임
- (연결 기준) 대상 기업⁵⁾ 198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을 받음

<표 3> '25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 분	시장별			규모별 ('25년 말 자산기준)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2조원	2조원 이상	
전체	748	898	7	1,046	399	208	1,653
적정의견	735	887	7	1,027	394	208	1,629
(비 중)	(98.3)	(98.8)	(100)	(98.2)	(98.7)	(100)	(98.6)

2) 비적정 의견

□ 감사대상 증가('24년 1,615사→'25년 1,653사, +38사)에도 불구하고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기업은 전기 대비 9사 감소(33사→24사)함

-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11사로 전기(22사) 대비 11사 감소,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있음)'은 13사로 전기(11사) 대비 2사 증가함
- 비적정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사업계획 수립·검토 프로세스), 손상평가, 전사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등과 관련됨

4)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5) '23년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며, '29년 5천억원 이상, '30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표 4> '25년 내부회계 비적정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 분	'25년(A)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4년(B)	증감회사수 (A-B)
의견거절	11	7	4	-	22	△11
부적정	13	6	7	-	11	+2
합 계	24	13	11	-	33	△9

3)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사 중 16사(66.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임

-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기업이 8사 존재함
- 동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5> '25년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사)

내부회계 감사의견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거절	한정	적정
내부회계 의견거절	11	11	11	-	-
내부회계 부적정	13	5	5	-	8
합 계	24	16	16	-	8

유의사항

1) 정보 이용자 유의사항

-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한 사항은 '강조사항'에 별도 기재함
 - 적정의견이라도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후속기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⁶⁾에 유의해야 함

6) '24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 84사의 32.1%(27사)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표 6>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 ('26년 7월 시행 기준) 7)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기준 조기화	('26.7월) 200 → 300억원 / ('27.1월) 300 → 500억원	('26.7월) 150 → 200억원 / ('27.1월) 200 → 300억원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좌동
완전자본잠식요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좌동
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좌동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대응에 유의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회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우려가 있음

2) 회사·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27년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K-IFRS 제1118호)⁸⁾에 대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범주화, 영업손익 개념 변경,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 추가 등 중요한 회계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사항이 회계정보 산출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함
- '25년부터 외부감사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준거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함(일부 비금융회사는 '26년부터 의무 적용)
-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으로 감시가 강화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6.5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⁹⁾ 등 제도가 개선되어 회계부정 신고 관심도가 제고됨에 따라, 회사 지배기구는 회계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7)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2026.04.17.

8)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를 전면 대체하는 기준서

9)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추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2026.05.20.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요약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7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분야로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 ▲지분법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선정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사전 대응을 유도할 계획임
- 과거 심사 결과 진행률 과대산정에 따른 매출 왜곡, 지분법 적용 오류, 충당부채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관련 회계기준 적용 및 주석공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임
- 기업은 2026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관련 회계처리와 공시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공시 후 중점 분야별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중점심사 개요 및 현황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매년 선정·공표¹⁾하고 있음
-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최근 경제이슈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2019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345개사를 대상으로 회계이슈를 심사한 결과 48개사(13.9%)에서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됨
 -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됨

1) 한국공인회계사회,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06.29.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표 1> 연도별 재무제표 주요 지적사례 ²⁾

유형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8	10	12	14	23	20	33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3	1	3	5	3	3	9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1	-	1	1	3	3	3
3. 유형자산 과대계상	3	1	2	1	-	1	2
4.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1	1	3	-	-	2	1
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과대(소)계상	-	-	-	-	1	5	2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	-	1	-	4	-	-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	-	-	-	-	-	-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	-	-	-	-	2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	-	-	1	-	1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	3	-	2	-	-	2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	1	1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2	1	2	4	11	2	10
13.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4	-	-	-	-	-	2
14. 기타손익 과대(소)계상	2	3	-	-	1	-	1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2	2	8	13	5	9	7
1.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	-	1	1	-	-	3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2	-	2	9	1	3	2
3.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소)계상	-	-	2	1	1	1	-
4. 유동·비유동 항목간 계정 재분류	-	2	3	2	3	5	2
C. 주식 미기재	3	3	4	9	15	10	8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	1	3	3	9	3	5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2	2	1	5	6	7	3
3. 투자유가증권 관련	-	-	-	-	-	-	-
4. 기타 주식 미기재	1	-	-	1	-	-	-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2	1	2	-	-	-	-
E. 회계처리 위반 없는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	-	-	16	5	5
1.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	-	-	-	8	3	4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	-	-	-	6	-	1
3.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위반	-	-	-	-	2	2	-
F. 법규 위반사항	1	4	4	3	2	2	5
합계	26	20	30	39	61	46	58

2) 한국공인회계사회,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06.29.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 진행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와 진행기준 적용 시 추정에 따른 진행률 과대 산정, 매출 과대계상 등 수익인식과 관련한 지적사례가 발생함
 - 공사 진행률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공사수익을 과대 계상함
 - 총공사예정원가 증가를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함
-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용역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2)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오류와 지분법 적용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함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과 지분법 손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음
 - 피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대신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함
- 지분율 및 주주 간 약정사항 등을 고려한 지분법 적용 여부와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피투자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품질보증비용이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PF채무 인수약정 및 지급보증 내역을 우발부채 공시에서 누락함
- 신규 또는 기존 주요 계약과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과 추정금액의 적정성 및 우발부채 공시 여부에 유의해야 함

II.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20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4)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

- ☐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련 거래를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및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³⁾
 - 특수관계자 거래총액 또는 거래대상을 누락하거나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음
 - 지급보증 및 투자계약과 관련한 주요 약정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 법적 형식뿐 아니라 실질 관계에 주의하여 특수관계자를 식별하고, 특수관계의 성격과 거래내용 등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공시해야 함
- ☐ 특수관계자 거래가 식별된 경우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의 성격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 ☐ 2026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4개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 결산 및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안내와 기업·감사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를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 ☐ 기준 적용·해석상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 지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임

3)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년 심사·감리 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2025.12.15.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¹⁾

요약

-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집권당은 국정과제(46-3)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초안 발표²⁾(「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26.2.25) 후 공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였고 2026년 07월 08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도출함
 - 최초 공시대상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확대 이후 단계적 로드맵 제시 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즉시 시행
 - 공시 개시 ('28년) 2년 후 제3자 인증 의무화 (FY29 공시정보에 대해 '30년부터 의무화)
- 지속가능성(ESG)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 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방향을 재설정 함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을 설계함
- 기업의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 및 공시유인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함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엄벌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착근되지 못한 실정이며, 낮은 적발 확률과 적발되어도 남는 불법이익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자 함
 -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비해 취약한 초동 대응능력 및 인력·조직의 획기적 개선 추진으로 적발 확률을 높이고, 고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는 불법이익을 넘어서는 금전 제재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자 함
- 2026년 07월 08일에는 금융당국과 집권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함
 - 지속가능성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 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 설계
 -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의무화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1) 금융감독원,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2026.07.08.

2) 금융위원회,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2.25.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배경 (계속)

- 기업의 차질없는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 및 공시유인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 확대 추진
 -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시 파일럿테스트 진행 ('26년)
 -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28년), Scope3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28년) 등
 -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시 기관투자자 ESG요소 고려여부 점검·공개

<그림 1> 국내 ESG 공시 추진 방향³⁾



3) 금융감독원,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2026.07.08.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1) 공시시기 및 대상

- ☐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확대
- ☐ 당정은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 '28년 ~ '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
- ☐ 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
- ☐ 금번 방안에 따르면,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28년 291개사, '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1> 연도별 공시 포함 기업 수 ⁴⁾

구분	2028년 (FY2027)	2029년 (FY2028)	2030년 (FY2029)	2031년 (FY2030)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5조원	2조원	2조원
공시대상	107사	157사	259사	259사
공시범위 포함 종속회사 수	184사	3,014사	3,490사	3,799사

(2) 공시채널 및 면책

- ☐ 공시는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이와 함께,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 도입 초기 3년간,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묻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
- ☐ 그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고려한 면책제도(Safe harbor)가 적용될 예정임
 -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할 계획임

4) 금융감독원,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2026.07.08.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3) 제3자 인증

-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 제도화를 추진함
 - 제3자 인증은 공시정보의 신뢰 수준에 대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판단을 의미함
-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임
-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4) 'Scope 3' 유예 및 공시기준

-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Scope 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는 의견수렴안을 유지함
 - 'Scope 1'은 직접 배출, 'Scope 2'는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Scope 3'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의미함
-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할 방침임
 -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고자 경우 등에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를 정비하여 지원. 자율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임

(5) 공시기준

- 2026년 02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효됨
 - 관련절차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됨
 -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 공시하고 공시주제 확대는 자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시항목 추가, 확대된 주제에 대한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
 - ❶ 톤 당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와 ❷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 물소비량, [자동차산업] 차량별 평균연비)의 선택공시를 허용함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표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주요 내용⁵⁾

구분	설명
거버넌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
전략	•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 기업이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톤 당 내부탄소가격(선택),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예: 반도체-물사용량, 자동차-연비), 기후 관련 목표

공시 이행지원 및 공시정보 활용 방안

(1) 기업 공시실무 지원

- ☐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고 공시기준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 기업과 전문가, 금감원, 거래소 등이 함께 검토하여 Best practice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공시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 기후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 리스크 분석·평가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2028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해외 분석도구를 고가로 이용중인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2) 공급망 데이터 산정·관리

- ☐ ‘Scope 3’ 공시에 대비하여 기후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Scope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임
 -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가 높은 전과정목록 데이터(LCI)를 2028년까지 1,000개를 구축할 계획임
 - LCI(Life Cycle Inventories) : 원료채취, 수송, 생산,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탄소배출 등을 물질·공정단위로 모듈화한 데이터
- ☐ 산업부는 협력업체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의 공시기업에 제출(단일입력-다수대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5) 금융위원회,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 1-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 2026.02.25.

II. 2026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④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3) ESG 종합컨설팅

- 관계부처는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사업도 적극 확대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산업부는 로드맵에 따라 추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기후부·중기부도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4) 공시정보 활용 확대

-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외의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활동시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공개할 계획임
- 추가적으로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시 공시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공시 실행 향후 계획 및 기업의 대응 방향

-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조만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관리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
-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힘
-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법령 개정안 마련, 인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의 공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관련 지원 방안도 협의·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범위가 확정된 상황으로, 의무화 대상 기업 및 잠정적 의무화 대상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방식의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자문교수단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

배예슬 과장

yaba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